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91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임종득 · 권영진 · 이인선
성일종 · 조정훈 · 강선영
이준석 · 유용원 · 최형두
한기호 · 이소희 · 김석기
서천호 · 박대출 · 강승규
조지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한 군인이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7조의3(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u> <u>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u>

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
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
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
급한다.